

제410회 국회
(정기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1월24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6)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9)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7)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6)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4)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3)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9)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8)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7)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04)

상정된 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 2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6) 2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9) 2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47) 2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6) 2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4) 3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53) 3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69) 3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88) 3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7) 3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04) 3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확대와 딥

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조치를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사실 지난 4개월간 우리 정개특위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이런 아쉬움과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더 속도를 내서 국민들이 바라시는 그런 정치개혁에 대한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는 먼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확대에 대한 내용을 심사한 후에 댁페이지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되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인 관계로 의결은 모든 논의가 끝난 후에 일괄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의사는 아까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하시니까 의사진행발언까지만 공개를 하고 그리고 비공개로 전환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맹성규 위원 내년 총선까지 138일이 남아 있습니다. 4개월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될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 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논의도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정치 신인의 경우 본인을 알리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형 명부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당들의 경우에는 경선을 하고 있음을 감안 하고 정치 신인들이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관련 법들이 조속히 상정돼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지금 맹성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얼마 전에 있었던 2소위에서 의결된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경우에 정당이 민주적으로 당헌·당규 등에 따라서 선출하여야 한 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금방 말씀 주신 부분은 만약에 당헌·당규에 따라서 비례대표 경선이 이루어 질 경우에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선거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관계로 불필요

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속 입법조치가 필요하 다라고 하는 제안으로 제가……

○맹성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확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추가로 논의가 돼야 된 다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이구요.

관련해서는 김상훈 2소위 위원장님, 간사님과도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12월 초에 한 번 더 1소위, 2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해 보자고 서로 의논을 일단은 한 상태고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해 보자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이후에 각 당내에서 논의를 좀 해 주시면 간사 간에 추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 훈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해서 심사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입법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738)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976)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069)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447)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226)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124)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353)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2569)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3088)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4417)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5504)

(10시11분)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총 11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끝나고 나서 브리핑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보면 선거운동의 방법과 관련된 피켓 소지 여부 그 부분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다룰 게 답페이지와 관련해서 그 대상 그다음에 방법, 벌칙 여기까지가 오늘 논의 되는 크게 두 가지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문근 전문위원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안,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고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어깨띠·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 보시면 예비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와 달리 소품 등을 어깨띠와 표지물로 제한하면서 이를 착용하는 방법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전문위원 보고에 대해서 선관위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그동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과정에서 착용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저도 해 보니까 목에 꼭 둘러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게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맹성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소위원장 김영배 이 안건 처리하고 하면 안 될까요?

○박정하 위원 예, 처리하세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 안건은 여기까지 동의가 된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박정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하 위원 지금 우리가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얘기한다는 것 그다음에 법안으로 그걸 정리해 놓는다는 게 너무 빨리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취지인지 다시 한번 설명 주시면……

○맹성규 위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양당 간에 사실은, 큰 정당은 후보들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역 후보로 나서기보다는 당내 비례대표 경선이 훨씬 실질적으로 좌우하다시피 하는 건데 이분들도 큰 정당처럼 서열이 딱 정해져 가지고 명부로 콕 나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경선을 할 때 선거운동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위반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 걸 얻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건 그러면 선거운동이 초기부터

너무 과열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는 전제하에 사실은 그런 게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맹성규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지요.

○박정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맹성규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배 그게 꼭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면……

○박정하 위원 그렇게 보여지는데.

○맹성규 위원 예를 들어서 큰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고……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큰 정당, 우리 민주당도 지금 비례대표 경선을 본격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부에서.

○맹성규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데 비례대표를 예를 들어서 경선을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한테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본인들을 알리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하 위원 비례대표라는 건 사실은 취지는 정당을 알리는 거지 후보를 알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맹성규 위원 그런데 정당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아까 김영배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정당이 누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으로 결정을 하면 할 필요가 사실 없지요. 그런데 정당 내부에서도 그 구성원 간에 경선을 통해서 한다거나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선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하는 걸 완화시키자. 그리고 최소한 저희들이 지역에서 경선하듯이 제도를 좀 보완하자 그런 취지예요.

○박정하 위원 일단 1소위원장님이 1·2소위에서 합쳐서 논의하시기로 하셨다니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사실 조금 보완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선거제 협상이 더 진전이 안 돼서 현재 제도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도 비례 전문 정당들이 만들어지거나 여러 비례와 관련된 선출 과정이 투명성,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소지도 있고 각 정당 내부에서도 조금 더 민주적으로 후보들을 선출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올 경우에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안드리는 거라서 이견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다룰지는 간사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조치 신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현행법의 단어에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는 문제 여부인데요.

우선 첫 번째 주제인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조치 신설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문근 소위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입법취지를 보시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의 사진·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딥페이크 영상 등과 관련된 규정은 없어서 선관위의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보면, 딥페이크 영상 자체가 사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또 딥페이크 영상에서 주장하는 사실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허위가 두 가지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서 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으나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고 공표하는 경우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딥페이크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표시하더라도 영상물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인 경우에 역시 250조와 251조, 251조는 후보자비방죄입니다. 사실을 공공연하게 공표해 가지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영상 게시자가 법적 책임의 주체이고 후보자와 사전 협의하는 등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후보자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운용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오른쪽의 우리나라 법제와 해외 주요 입법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 보시면, 첫 번째 문제로 식별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자료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마는 왼쪽의 표는 계속해서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왜냐하면 오른쪽 검토의견하고 보시는 데 편리하시도록, 4쪽·5쪽 다 같은 표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른쪽 제일 위의 검토의견부터 보시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식별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가상인물과 관련해서 개정안들은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인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고—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이렇게 동일하게 규정하는 게 적절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상인물은 민형배 의원안과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표시 대상인데 표시 대상도 의원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안들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면서 ‘음향·화상’ 또는 ‘이미지·영상’ 이렇게 용어가 다른데 오른쪽 검토의견에 보시다시피 화상의 사전적 정의는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형상으로 사진이 제외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인순 의원안처럼 ‘이미지’라고 우리 법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인순 의원안처럼 표시 대상을 ‘선거운동 목적의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하되 추후에 여기서 ‘딥페이크영상등’으로 약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시 시점인데요. 이 표시 시점을 물론 제작 당시나 제작·편집·가공 이런 단계별로 특정할 수는 있겠으나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가 좀 불명확한 측면도 있고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제작·편집·배부·상영·게시 전체 행위에 대해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수정의견은, 제작·편집·배부·상영·게시 전 시점에서 식별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5페이지, 표시 방법입니다.

표시 방법은 개정안에 보면 윤호중 의원님 안은 법률에 이렇게 하고 있으나 음향이라든가 또

영상·이미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각각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님 안처럼 선관위 규칙으로 표시 방법을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님 안은 일반 동영상에 가상 동영상 표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굳이 추가할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님 안처럼 이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식별가능한 조치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식별가능한 기술 조치를 표시했다면 이 자체는 실감은 나지만 그 사진·영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명확하게 표시가 된 것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표시를 하였다 해서 현행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술적 조치를 표시했다라도 만약에 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표시를 안 했다면 이것은 표시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개정안들은 징역형이나 벌칙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표시의무 자체를 위반한 것은 남인순 의원안처럼 과태료로 하는 것이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표시의무를 안 하고 공표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선관위 법규윤용기준은 표시하지 않고 공표한 경우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 부분에서 보고드릴 것처럼 이걸 가중처벌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의 내용은 기술적 조치, 그러니까 이게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걸 공표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검토의견 보시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은 기술적 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허위성 발견을 보다 어렵게 하기 때문에 좀 더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개정안들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면, 가상인물의 경우 이것도 아까 기술적 조치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과 일치

하도록 하는 민형배·지성호 의원님 안과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규제 정보는 아까 기술적 조치 규정에서 했듯이 ‘딥페이크영상등’으로 약칭을 하고 기술적 조치를 위반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규제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보면, ‘공표 또는 공표하게 한 자’ 이것과 일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벌칙인데요. 벌칙은 개정안을 보시면 이해식 의원님 안처럼 현행 규정보다는 벌칙 규정을 낮추어서 규정한 사례가 있고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한 경우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딥페이크 표시를 하지 아니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윤호중 의원안처럼 가중처벌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드린 것을 10쪽의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먼저 82조의8(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하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읽어 드리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고요.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이걸 ‘딥페이크영상등’이라고 약칭하면서—이것을 제작·편집·배부·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여야 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11쪽 위에 보시면 과태료에 4호를 신설해서 제82조의8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되겠고요.

그러면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시 아니하면 허위사실공표죄가 되는데 이걸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4항을 신설하

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2조의8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제1항은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건데요—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제2항은 낙선입니다. 낙선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건데 그렇게 표시하지 않고—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해서 벌금의 액수를 가중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적 조치를 표시한 경우는 딥페이크 영상 등이 실감나게 제작되기는 했지만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걸 공표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여부는 현행법에 따라서 하던 것 같고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장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딥페이크 영상 표시의 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적용되고 이걸 공표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오늘 2개의 사항을 다 같이 함께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선관위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AI가 생성한 허위정보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AI 생성정보 대량 생산·유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규정이 없는데 선거법에 규정을 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식별가능한 기술적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상인물은 현행법 체계 그리고 운용의 통일성을 위해서 법 250조와 같은 범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고요.

그다음 표시 대상, 표시 시점, 표시 방법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일반영상 표시 금지 부분은 일반영상에 가상의 영상이라는 표시를 해도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행 250조에 따라서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표시 금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벌칙에 있어서 가상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올바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해서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지의무 신설 또는 현행 조항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규제 대상인 가상인물, 규제 정보, 규제 행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벌칙 부분에 있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는 빠르게 확산·전파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이 커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논의 하시지요.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혁 위원 이게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지금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82조의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장동혁 위원 선거운동을 위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데 그것이 후보자나 그 관계자로만 제한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선거운동을 위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면 그것이 기술적으로 합성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밝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말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선거운동을 위해서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실제 영상이 아니라 합성되거나 뭔가 한마디로 조작이 가해졌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장동혁 위원 그렇다면 그 사실을 유권자들이 알고, ‘아, 이것은 합성되거나 조작된 부분이 있구나. 조작이 가해진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 필요성에 있어서 어떤 차별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나 그 관련자, 배우자나 그 사람들에 대한 영상만을 이렇게 제한을 하고, 나머지 것은 선거운동을 위해서 뭔가 합성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유권자에게 그걸 알리지 않고 해도 되고, 이게 이 주체로 한 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남인순 의원안처럼 제한 없이 하는 것이 본래 입법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와 관련된 가족 그렇게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장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행위의 주체를 그렇게 한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영상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장동혁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영상의 대상을 한정해……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위해서 어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면 그것이 어떤 영상이든 이걸 선거의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영상에 조작을 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작을 가했다고 하는 걸 알려야 되고 그 영상 내용에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당연히 그 관련 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선거운동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라면, 그것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면 그 사실을 유권자에게 저는 다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차별을 두고……

이것만 제한하면 뭐든 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고, 다른 영상, 다른 사람을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작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제한하면 된다고 하는 근거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범위를 넓힐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위원 아니, 법조문의 체계가 이것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 체계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르다고요. 어떤 영상이든 선거운동을 위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것은 그건 조작된 영상이잖아요, 우리가 나쁜 말로 표현하면. 그 조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후보자에 관한 영상, 배우자에 관한 영상·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실재하지 않는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실재하지 않는 영상이라고 하는 걸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거라면 저는 다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 잠깐만 보고 좀 하고 선관위 추가 답변을 듣고 계속 이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신문근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도 이 개정안 검토하면서 사전에 검토를 해 본 사항이기도 해서……

일반인이, 예를 들면 유엔사무총장이라고 치고 유엔사무총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발언한 것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표를 한 경우라면 당선 목적으로 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고, 저희가 250조에 맞춘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있는 그 대상이 특히 선거운동에 관련해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한 경우도 딥페이크 영상으로 했을 때는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장동혁 위원 그런데 이 영상이 한번 유포가 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기본적으로 허위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딥페이크 영상이 한번 유포가 되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까지 하자고 하면서 어떤 영상은 그것이 유포가 돼도 괜찮고 후보자에 관한, 관련자에 관한 영상은 유포가 되면 안 되고. 아니, 나쁜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그것은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것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고, 다른 경로 처벌 가능하다……

만약에 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한다고 하면 그 위험성 때문에, 어떤 딥페이크 영상이든 나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은 다 가중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야지요. 그렇게 다른 경로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건 빼도 된다고 하는 것은 법체계에 전혀 안 맞는 거고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전문위원 신문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식별 가능한 조치는 어차피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가 되는데 여기서는 가상인물을 굳이

제한하지 말고, 뒤에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250조의 1항과 2항에서 후보자·배우자 이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행 250조에서 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장동혁 위원 250조에 가서 거기에서 체계를 맞춘다고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 신문근 그러니까 가중처벌의 경우는, 250조가 어차피 후보자…… 37쪽을 보시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공표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적 식별 조치는 굳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전부 다 기술적 식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동혁 위원 그 조치를 하지 않아서…… 나쁜 의도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후보자에 관한 것이든 전혀 상관없는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그런 것은 당연히 식별 조치를 다 해야 되고 금지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저는 가중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조항을 두려고 하는 이유는 딥페이크 영상의 위험성과 그것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나면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다고 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작성됐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왜 구분해…… 선거를 위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작성했으면 그건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하는 걸 유권자가 알아야만 되고 그것이 나쁜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유포됐을 때 위험성은 다 똑같은 것이지, 저는 그 구분을 두고 달리하는 이유가 도무지 납득이 잘 안 가요.

○소위원장 김영배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제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기본 취지에 있어서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하고 생각이 저는 똑같은 것이, 우리 선거나 정치 양상이 아주 급속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선거는 이기는 게 장땡이고 이기고 나면 다시 그걸 어떻게 바꾼다는 건 어렵다 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 왔지만 요 근래에는 특히

그게 더 심해져 가지고 선거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저질러졌을 때 사법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사후적으로 시정하고 정의를 구현한다고 그럴까요, 바로잡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차적 정의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고 결과가 확정되고 나면 심지어 경찰, 검찰, 법원까지도 그 결과에 종속되는…… 사실은 그런 절차적 정의, 사법적 정의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사후에라도 어떤 형태로든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점점 그걸 포기하는 형태가 되고 시간도 길게, 수사나 재판을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 가지고 사후적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무망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민주주의 위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사전적 예방,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저질러지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선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도 이렇게 처벌규정이거나 이런 것 만들어 놓아서 선거 과정에서 잘못이 저질러지면 나중에 바로잡으면 되지, 이기고 지는 걸 바로 뒤집으면 되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일 자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방지하고 예방하고 원천 봉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법 만들어 놔 봐야 이것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결과에 종속돼 버려요. 이긴 자 편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되고 특히 딥페이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전문……

○소위원장 김영배 선관위 답변 잠깐 듣고 이어 가면 어떻겠습니까?

○장동혁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배 선관위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아마 위원님께서 가상인물 범위에 대해서 후보자와 관련된 그 부분은 특정하지 말고 선거와 관련돼서 맞는 부분은 다 기술적 조치를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장동혁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아마 선거 때 그런 딥페이크 영상 등이 많이 확산·전파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술적 조치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음성, 이미지, 영상 다 나눠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위원 예를 들면 후보자는 아니고 관련자가 아닌데 마치 전직 대통령이 생전에 어떤 연설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 것처럼, 생전 영상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냥 하고 유권자들이 ‘아, 생전에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 아니면 지금 세계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음성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해도 지금 이 법에 의하면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영배 저도 장동혁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오다가 고민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허위사실을 말할 때 그 대상자가 이 후보자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처벌은 받는데 말하는 그 대상이, 그렇다고 후보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후보자와 후보자와 직결된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딥페이크 이것은 등장하는 사람이 후보자 본인이거나 본인과 관계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혀 엉뚱한 일반인이거나 아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외국에 있는 누군가가 그 후보자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을 막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이것은 현재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어쨌든 그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게 합리적 핵심인데 그 부분을 피해 가게 되는 양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나 마나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신문근 제가 좀 명확하게 다시, 저희가 자료를 카테고리를 구분하다 보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10쪽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후보자만 나오는 영상이 아니고……

저희가 만들다 보니 오해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보시면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이렇게 만든 음성, 영상이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꼭 이 인물이 안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와서……

○장동혁 위원 그러면 이 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요. 그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요, 그렇게까지 넓게 해석하려면.

○전문위원 신문근 그러니까 후보……

○장동혁 위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후보자와 관련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건 또 처벌받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신문근 현행법 구조도 보시면, 그러니까 후보자 인물……

○장동혁 위원 현행법의 구조를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현행법의 구조대로 하지 말고 이 법을 만들고 처벌하려고 하는 목적, 금지하려고 하는 목적,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 조문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그게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후보자와 관련된, 배우자와 관련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선거하고 후보자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는 영상이면 다 처벌할 것 같으면 이게 법이에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거지.

○전문위원 신문근 현행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후보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후보자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영상이 충분히 딥페이크 영상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자꾸 그렇게……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 법을 피해서 어떻게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그 악용하는 사례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걸 후보자하고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면 그건 되돌아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상대 후보가 했다는 관련성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선거에

당선돼서 여전히 뭔가를 하고 있고 나는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아니, 후보자와 관련 없는 누군가가 영역을 가든 뭐 하든 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미 떨어졌는데?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그것은 처벌 대상자의 문제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처벌 대상이 후보자냐 아니냐 이 문제니까 그건 조금 별론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의 경우에 후보자, 배우자 말고 어떤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내용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져서 돌고 그게 말씀대로 특정 정당이 어떤 일과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돌았을 경우에—후보자가 아니고 후보자 가족이 아니고—그런 허위의 사실이 돌았을 경우에도 이 선거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장동혁 위원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건 여러 가지잖아요. 직접적으로 후보자 이외에도 그 정당에 관련된 누군가가 어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당이 관련됐다든지 그 정당과 아주 유력하게 뭔가 관련이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딥페이크를 통해서 일어나면 그 부분은 이 법으로 의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장동혁 위원 어떤 정책을 두고도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은 진짜 지금 우리 세계 인류사에 있어서 참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세계의 매우 유명한, 인지도가 있고 말 한마디가 엄청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그런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건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에는 안 들어가요. 하지도 않은 말을 그 사람이 그냥 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큰 집회에 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도 그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여기에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진실하지 않은 영상을…… 더군다나 딥페이크 영상,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무슨 만화 캐릭터처럼 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야 그건 우리가 이해를 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 이것은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표시하자고 하는 그것이 왜……

○이원택 위원 저도 조금……

○소위원장 김영배 이원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택 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하고 또 일반적인 어떤 정책이든 주장에 대한 비판하고 정당에 대한 비판하고는 약간 구분을……

선거 당선과 낙선을 목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 그런데 다른 정당의 주장이든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하고 이걸 좀 구분이 돼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다른 트랙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에 대한 비판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

○소위원장 김영배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물론 당락이지만 총선의 경우는 개별 후보자, 개별 지역구별 이야기도 있지만 전체 정당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규모가 전국적 규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지적이거든요.

○이원택 위원 그런데 제 견해는 어떤 정당의 주장이나 정책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딥페이크를 통해서 악의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것을 예들 든다면 개별 후보자의 당락의 연관성 문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정당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다른 트랙으로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다른 법률체계를 통해서 제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게 각 정당에 대한, 양쪽에서 비판도 할 수 있고 주장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정당을 향해서. 그런데 그것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그것을 가리는 문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위원 그런데 허위사실의 범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허위사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250조에 의하면 허위사실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후보자나 그 배우자나 이런 사람과 관련된 영상은 아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선거 직전에 문자로 발송하는 것은 당연히 선거운

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지만 여기에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작해서 보내도. 그렇잖아요?

○맹성규 위원 저도 우리가 이 규정을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면 최소한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행태 같은 게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장 위원님하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그런 식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선관위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선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법의 취지가 후보자의 당락과 연관해서 의율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리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것 이외에 일반적인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형법이나 이런 데에 의율하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아까 자료에도 있었습니만 3쪽의 현행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법제에서 공직선거법 외에 형법, 정보통신망법, 여러 가지 법률이 있었는데요 그런 법률로도 규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지적되었듯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이나—후보자가 아니고—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허위의 사실을 해서 선거에 실제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당의 입장이나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명목의 법으로 의율할 수가 있느냐 그거지.

그러면 그게 현행 형법이나 망법 그다음에 기타 전기통신법 이런 법률로도 충분히 의율할 수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즉 당선과 낙선과 관계되는 법의 범위에서 고발이 이루어지고 혹은 아니면 의율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로 지금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선거운동 목적이 있는 경우에 이 개정안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거운동 목적이 없다고 하면 선거법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다른 일반적 법률을 가지고 규제가 가능한지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맹성규 위원** 지금 저희가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부작용을 가능한 한 없애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선거운동이나 아니냐의 경계선을 어떻게 가르마를 탈 거냐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마치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나중에 정리가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는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어떤 정당하지 못한 것 그리고 부당한 것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예상해서 최소한 줄여 보자는 게 이 규정을 도입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는,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판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배** 장동혁 위원님, 제가 한번 여쭙볼 게 취지는 알겠는데 이 법은 지금 선거법에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는 것은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장동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선거운동이면 당락과 연관되는 것이고 그것은 후보자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락에 관련된 내용에 연관이 입증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다른 허위의 사실들은 명예훼손도 있고 망법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으로 의율을, 고발하거나 이루어지는 게 맞지 여기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면 모든 페이크 뉴스를 다 다루자 이렇게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장동혁 위원** 저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이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제가 여기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선거운동을 위해서 제작한 영상은 그게 딥페이크 영상이면 ‘이것 딥페이크 영상이다’라고 표시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왜 범위를 정…… 그러니까 그냥 아무

영상이나 다 갖다가 지금 처벌하자, 문제삼자는 게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해서, 선거에 당선되거나 누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표시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전부 다.

○**조해진 위원**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하는 규정은 기존의 선거법에 늘 있는 거니까, 새로 들어오는 규정이 아니라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것은 선관위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걸 늘 해석하고 해 왔고 사법기관 경찰, 검찰, 법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늘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축적돼 있는 것이고 이걸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는 없을 것 같고.

그 뒤의 대상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이걸 지워 버리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이렇게 죽 연결하면 되는 건데……

○**소위원장 김영배** 맞아요. 남인순 의원님 안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선관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인순 의원안대로 하면?

○**장동혁 위원**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요.

○**맹성규 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기술적 표시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아까 개정안에 되어 있었는데요. 음성·이미지·영상 범위가 좀 넓어지기는 하는데 저희가 규칙을 잘 정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혹시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 준비 과정에서 조금 더 필요한 보완이 있으면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맹성규 위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처벌조항 같은 건 손 안 봐도 돼요, 만들어 놓은 것?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뒤 정합을 맞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신문근**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기술적 조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 가지고 현행 허위사실공표죄하고 했을 때 가중처벌을 이야기했었는데 남인순 의원님 안은 그것과 별도로 처벌규정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현행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돼 있는데……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별책은 별도로 하고. 아까 대상자 그 부분은 남인순 의원안대로 하고 가중처벌 문제는 지금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앞의 가상인물 대상 그 부분은 남인순 의원안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하면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아까 보고한 가중처벌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의논해 주시지요.

○이원택 위원 저는 전체회의 때 말씀드리겠는데 이 적용 범위가 제가 볼 때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것에 딱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당락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범주 내에서의 어떤 적용 부분을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락을 위하여인데 아까 예를 들었던 정당을 비판하거나 또는 유명인사가 당락을 위해서 어떤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를 디스하는 또는 형제자매를, 가족을 디스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딥페이크 내용에 따라서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선거운동 목적에 부합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자료를 좀 더 취합을 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게 좀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위원장 김영배 이 부분은 이원택 위원님도 그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딥페이크가 아니면, 이게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계속 아주 빠른 속도로 진파가 순간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예전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게 보통 보면 잘해야 언론에 기사 좀 낼 수 있게 한다거나 어디에서 막 발설을 해서, 특정 모임에서 말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발언, 그러니까 화자와 대상자가 비교적 분명해야만 영향력을 가지고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말씀대로 이게 꼭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후보자와 연관되어 있는 옛날의 어떤 회사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사건이었다든지 이런 것에 연관되어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일반 당원에 대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게 분명히 선거운동 목적인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 관계자, 가족이 아닌 대상의 내용을 가지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판별이 될 수 있는 내용이면 이 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 못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규제 대상을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하는 맨 앞단의 문구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과 무관한 것은 아예 이 법의 의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의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그 해당 문구에서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거든요.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든 사례들은 거기에 안 맞는 사례들을 든 것으로 제가 보여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선거운동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끌어들이는 작업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너무 광범위해 보이고……

○장동혁 위원 정당에 관한 것, 정책에 관한 것이 실제 영상이라면 저는 그것을 선거운동에 얼마든지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고……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법이 선거운동의 당락과 관련된 연관성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아 보여서, 그런데 그 대상이 아까 들었던 사례하고는 좀 불일치해서, 유명인사가 어떤 발언을 했다, 이건 가상이라는 한테 선거운동에 후보자나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의 직접적인 발언을 또는 간접적인 발언을 노출했다 이것은 당연히 연관되지요. 연관될 수 있지요. 이것은 팩트면 상관이 없지만 팩트가 아니면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외의 연관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이것은 잘못하면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판단하는 상황에 따라서 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광범위한 어떤 제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명확성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다 이거 아니야.

○최형두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상인물이 어떤 허위사실이든 사실을 해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 등장하는 가상인물을 후보자 또는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실제로 등장하는 가상인물은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등장해서 다른 제3의 인물이나 혹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의 영상으로 후보자의 직접적인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실제로 사실과 다르게 공격하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면, 지금 얼핏 보면 모든 것이 다 처벌될 수 있어요. 의욕될 수 있을 텐데 이게 공연히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또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후보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예컨대 유명한 배우가 가상인물로 등장해서 어느 지역은 잘돼야 되는데 어느 당은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 법에 따르면 거기에 등장하는 가상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법과는 관계없게 되거든요. 그것은 합당한 일이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가상인물을 꼭 이렇게 국한할 필요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 후보를 직접적으로 거명하거나 또는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나열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보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10페이지에 있는 조문안 한번 보시지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처벌 대상은 누구든지이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후보자, 배우자 등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장동혁 위원 그러면……

○소위원장 김영배 잠깐만요.

이 내용으로 신설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조문은.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관하여’라고 하는 게 불필요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딥페이크를 만들면, 허위사실에 해당하면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장동혁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항을 신설하지 아니해도, 아까 남인순 의원안에는 이 조항이 신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딥페

이크가 허위사실이면 처벌하고 그것 표시 안 하면 가중처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지요?

○전문위원 신문근 신설하는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이걸 명시할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김영배 아, 신설을 하는데……

○조해진 위원 대상을 제한하지 않네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동혁 위원 전문위원님이 이 검토보고서 작성 자체를 잘못하셨습니다. 가상인물은 나오지 않아요, 이 법조문에. 원래 전문위원님 생각이 가상인물은 누가 나오든 딥페이크 영상에서 하려고 하는 정보가 후보자 그리고 배우자, 형제자매, 여기와 관련된 정보라면 그 정보는 반드시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해야 되고 그것 위반하면 처벌한다라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상인물의 제한은 없는 거예요.

○최형두 위원 그렇지요.

○장동혁 위원 가상인물은 누가 나와도 그것이 후보자에 관련된 거거나 배우자에 관련된 거거나 형제자매와 관련된 내용이면 넓게, 그래서 그 체계를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취지였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하는데 검토보고서를 ‘가상인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마치……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심각한 혼돈을 줬어.

○전문위원 신문근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혼란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방금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요.

○최형두 위원 맞아요. 저도 이 검토의견 보고서 문안을 보니까 지금 이게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전문위원 신문근 저희가 구분을 좀 하다 보니, 이게 간략하게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 또 하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조건의 해석이 좀 논란이 있는데, 선거운동을 위하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선거운동 기간에 나오는 것들, 그중에서도 후보 또는 후보 주변, 정당, 정치적 이슈 이런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대개 다 그런 목적이, 평소에 안 하던 것을 그때

가서 하는 것은 다 목적이 판단이 되고 그 판단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선평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선관위 판단에 따라서 이게 딥페이크 표시 대상에, 선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인데 선관위 규칙이나 판단에 따라서 표시 대상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가령 그런 게 생긴다고 가정해도 그것 별로 대단한 것 아닙니다.

선거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표시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가 그렇게 사무 과정에서 선거 목적이 아닌데 표시하게 된다고 한들 그건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굳이 ‘나는 선거 목적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강요하십니까?’라고 따질 사람들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선거 목적이 아닌데 바로 처벌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표시하라고 하는데, 그건 선관위가 선거 목적이라고 판단해서 표시하라고 하는데 나는 아닙니다라고 굳이 그걸, 그게 처벌도 아닌데…… 그래서 굳이 그것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거 목적이 아닌 것까지 혹시 표시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것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맹성규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딥페이크 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다라고 신고하게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 딥페이크 영상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그것에 따른 별도로 처벌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만 하면 그 내용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지금 처벌하는 것처럼 그게 누구냐와 관계없고 그 다음에 딥페이크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내용이나에 관계없고.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 영상이 딥페이크다라는 것을 신고하게 하고 그게 한 파트,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 파트,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그것은 선거법에다 그걸 굳이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맹성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소위원장 김영배** 일반법이지요. 그건 딥페이크에 관한 일반법이지 선거법에 딥페이크를 규정하게 되면 저는 약간 본말이 전도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법에 규정하려고 하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맹성규 위원** 아니, 선거법에 규정하려는 것은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영배** 당연하지요.

○**맹성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취지에 맞도록 법을 심플하게 하면 되지.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러니까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하는 전제가 반드시 붙게 되잖아요.

○**맹성규 위원** 아니, 누구든지 선거……

○**소위원장 김영배** 선거법으로 의율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즉 되게 하거나 안 되게 하거나의 목적과 연관된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성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딥페이크를 지금 처벌하거나 대상으로 놓는 게 아니라 선거법의 대상이 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되거나 표시되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차이가, 저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장동혁 위원** 저는 딥페이크 자체는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딥페이크는 허위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만 처벌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영상과 제 영상을 합성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향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너 최고다’라고 하는 영상 만들어 가지고 실제 영상인 것처럼 해 가지고 그 영상 만들어서 짹 뿌리면 그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가 어렵지요. 왜? 그냥 내 의견, 평가가 너 최고야…… 그런데 그 영상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무슨……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했다, 안 했다, 사실과 평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그게 그냥 허위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허위라 하더라도 선거법에서 의율하는 것은, 저것을 선거와 관계가 없으면 선거법으로 의율할 이유는 없고 형법이나 망법이나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의율하는 게 맞는 거고 선거법으로 하는 것은……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만 처벌한다고 하면……

○**이원택 위원** 기술적 표시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장동혁 위원 투표 전날 그 영상 문자로 다 뿌려도 처벌 못 한다는 거예요.

○이원택 위원 예, 그럼요.

○장동혁 위원 이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영상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만들어 내 놓고 지금 거기에 평가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것만 있고 그것이 허위사실일 때만 처벌한다고 하면 그게……

○맹성규 위원 그렇게 따지면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까 딥페이크로 선거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들 신고하는 조항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가짜의 범위를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 형제자매에 관해서 지금 현재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범위로 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범위에 정당을 집어넣는 것은 저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 그러나 제3자든 어떤 가상인물을 활용해서 후보자라든가 그 가족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가상인물 제한이 없는 건 분명해 보여요, 반기문 씨를 활용하든 누구를 사용하든.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딥페이크라는 것은 명확하게 기술적 표시가 돼야지요. 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장동혁 위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위원장 김영배 잠깐만요. 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보시면 1항은 뭐냐 하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래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 쪽 쓴 다음에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이게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1항이고.

2항은 뭐냐 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배우자, 형제자매에 관하여’, 이것은 범위가 더 좁아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서 위에는 ‘특정 지지단체’가 있는데—이것 자료 37페이지 보면 나오거든요—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의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허위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의 취지상 마찬가지로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이걸데 금방 장동혁 위원님 말씀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 동영상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허위일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형두 위원 딥페이크 자체가 허위지요, 없었던 사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없었던 일, 그런데 그것도……

○장동혁 위원 딥페이크 영상은 다 허위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그것도 허위의 사실인데 그 허위의 사실 중에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에 관하여’라고 하는 문구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명확성의 원칙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게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한 거다,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명확성의 원칙이 떨어지지 않냐,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아까 이원택 위원님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맹성규 위원 아예 그냥 딥페이크 이것은 사용 못 하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네.

○장동혁 위원 딥페이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허위사실이에요.

○전문위원 신문근 맞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것을 신고하고 써도 된다고 하면서, 딥페이크 자체가 없는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에 관한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250조에 있는 거기에 관한 내용이나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제 영상하고 합성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그게 허위사실이에요, 그러면?

○전문위원 신문근 그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전문위원 신문근 당연히 허위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가 됩니다.

○장동혁 위원 딥페이크 자체가 허위지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신문근 예, 250조 1항의 처벌되는 행위로……

○장동혁 위원 딥페이크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딥페이크 영상은 쓰면 안 된다는 거에

요, 그 자체로. 그런데 지금 이 법은 딥페이크 영상 써도 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신문근 그래서 수정의견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 보면……

○소위원장 김영배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신문근 82조의8에서 지금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걸 한다면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하여’ 여기까지만 하고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이것 다 빼고요. 그렇게 되면 뺀 부분을 읽어 드리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관하여’에 대한 부분을 빼면,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이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하고……

○장동혁 위원 당연하지요.

○전문위원 신문근 이걸 위반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이것을 규정하게 될 때 250조 1항·2항에 따라서 하는 것과 연계를 하게 된다면 어차피 이것은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허위사실공표죄하고 좀 연결할 필요가 있겠고……

○장동혁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딥페이크 영상을 써요? 없는 영상을 왜 만드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딥페이크 영상 자체는 괜찮은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허위냐 진실이냐를 또 따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신문근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장동혁 위원 그리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만 물고 그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전문위원 신문근 신고가 아니라 표시를 안 한 게 유포가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표시 안 하면 그냥 과태료 하고……

○전문위원 신문근 현행도, 현재도 법은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딥페이크 자체가 허위기 때문에

표시 안 했을 때는 250조에 따라서 허위사실공표죄로 한다고 하고 있고요, 선관위에서. 그다음에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표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가 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지금 처벌을 한다고……

○장동혁 위원 자, 딥페이크 영상은 허위지요?

○전문위원 신문근 허위입니다.

○장동혁 위원 그래서 250조로 처벌받지요?

○전문위원 신문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장동혁 위원 그렇게 처벌하면 돼요.

○전문위원 신문근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런데 신고하고 써도 된다고 이 법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신문근 그런데 현재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표시 안 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들어가고 표시 안 하고 이걸 공표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된다면, 현재처럼 표시 안 하게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도, 저희가 수정의견 드린 것도 표시 안 하면 당연히 허위사실공표죄가 되는 거고요.

○장동혁 위원 아니, 유권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줄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 취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딥페이크 영상 자체가 허위사실이라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장동혁 위원님 말씀과 우리 위원님들 아까 한 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딥페이크 영상 자체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딥페이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의무를 부과하자, 그렇지요?

○맹성규 위원 예, 그거까지는 뭐……

○소위원장 김영배 그거거든요. 그리고 딥페이크라는 것은 AI로 만든 영상이니깐, 그런데 AI 영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악의적으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가 되니까, 모든 딥페이크를 우리가 금지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딥페이크를 일반인들이 누구든지 만드는데 딥페이크 자체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수가 나와서, 옛날에 돌아

가신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고 이런 걸 우리가 막 못 만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선거운동과 연관했을 때 ‘딥페이크입니다’라고 써 놔도 이게 선거운동과 연관되었을 경우에 이게 허위사실이면 가중처벌을 당연히……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할 수 있도록……

○장동혁 위원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게 이제 구조를 짜야 되는 거지요.

○장동혁 위원 일반인이 선거와 관련 없이 만드는 딥페이크 영상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선거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지.

○장동혁 위원 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선거를 위해서.

○전문위원 신문근 옛날에 후보자가 AI 영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정책 공약을 한, 그렇게 할 경우는 이거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로 본인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자체가, 모든 딥페이크가 문제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지.

○이원택 위원 그러면 거꾸로 가상인물이 지금, 예를 든다면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누가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가상인물을 허용 범위를 정해 버리면 어떨까요? 가족, 친인척, 후보자, 배우자하고 형제자매에 한해서만 딥페이크 가상인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 배우자 그렇게 오히려 허용 범위를 제한해 버리는 게 나올 수 있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런데 이거는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후보자든 아니든, 예를 들면 이원택 위원님 지역구에서 우리 위원님이 딥페이크로 만든, AI로 맹성규 위원이 말하는, 예를 들어서 김제의 미래에 대해서 뭘 만들어 가지고 해요. 그러면 그건 딥페이크기 때문에, AI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AI로 만들어진 일종의 영상물이지.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영상이나 아니냐로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거나 선거운동의 목적, 즉 누구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는 어떤 문제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걸 따져야지 그 모든 것을 다 못 하게 하면 우리가 딥페이크 기술 자체를, 일반인들이 하는 행위 자체를 다 막아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거법의 취지하고는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장동혁 위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장동혁 의원의 지역구에 고속도로 빨리 놔야 됩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괜찮아요? 참……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그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장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늘 대비하고 해야지. 제가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반대할 때도 그런 건 고려 안 하고 한다고 계속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또 반대합니다.

아니, 지금 후보자가 나와서 정책 공약하는 건 괜찮지 않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정책에 관해서…… 그건 그냥 사실이 아니라 필요성에 대해서 ‘보령에 빨리 장항선, 빨리 KTX 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허위사실인가요? ‘놔야 됩니다’라고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문위원 신문근 그런데 그것을……

○장동혁 위원 그 영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막 어디……

○최형두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장동혁 위원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괜찮아요?

○최형두 위원 맞습니다. 장 위원 말씀같이……

○장동혁 위원 그 자체가 허위잖아요.

○최형두 위원 저도 발언 좀 합니다.

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데, 그런데 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해외 주요 입법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에.

여기 보면 미 텍사스주법은 공식 선거일 30일 이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법도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기만적인 오디오·비주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명확하지 마치 82조의8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유권자라든가 사람들을 오도할 수가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감시력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250조에 딥페이크는 허위의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명확한데, 이게 입법 취지는 알겠어요. 입

법 취지는 딥페이크를 통한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인데 82조의8을 이렇게 법안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딥페이크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기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게 ‘허위 뭐다’ 이렇게 막 가 버리면 만드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따지는 딥페이크는 진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피해자가 고발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조사가 들어가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82조의8 이거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라는 취지로 자칫 오해될 수 있고, 그 제한 행위를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공연한, 불필요한 오해와 딥페이크를 해도 된다는 또 다른 오인을 부를 수 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텍사스법규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아예 금지하고 있어요, 30일·60일 이렇게 해 가지고.

○**맹성규 위원** 이게 기술도 활용하고 선거운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상인물의 허용 범위를 제한된 범위로 허용을 해 주고 그걸 넘어서면 다 불법으로 보는 거고.

아까 그 기술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에 부합되게. 그러려면 본인하고 본인 가족, 형제자매 이렇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그쪽으로 한정해 주고 나머지는 못 하게 해야지요.

○**최형두 위원** 아니 위원님, 그것도 다른 심각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뜻밖에도. 왜냐하면 사실은 가상인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그분의 인상도 중요하고 그분의 가족이 중요한데 그걸 완전히 무슨 너무 유명한 영화배우처럼 더 꾸며 가지고 만들면……

○**이원택 위원** 아니, 그건 포스터니 뭐 다른 홍보 수단이 다 있는 거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최형두 위원**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보니까 이 법 조항이 공연히 딥페이크를 선거운동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지금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는 것 자체가 사실적 영상이 아니고 AI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상으로 만들어진 기술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제기를 하나 하신 거고.

허용 범위를 정할 것이냐 아니면 단속 위주로, 처벌 위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하는 범위와 그동안에 허위사실과 관련된 주요 처벌의 대상은 오프라인에서는…… 아, 온라인까지도 포함되는구나. 대체로 AI 기술이 아닌 경우는 지금까지는 ‘후보자과 등등등등’, 딱 정해진 범위 내에서 ‘관하여’라고 규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행위와 관련해서 의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제기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각각의 쟁점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논의를 더 이상 좀…… 지금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같은데 일단 선관위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뒤에 있는 가중처벌만 조금 논의를 하고 오늘은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다음 번 소위를 다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딥페이크 영상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신체에 다른 것을 합성해서 만들었는데 원본과 다른 그런 영상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원본과 다르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행법에 의할 때 AI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선거운동을 했고요, 대통령선거 때도 했고. 그래서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선 AI로 만들었다는 것은 표시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AI 표시를 안 하면 선거인들이 실제 후보자가 한 것처럼 오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250조로 지금 규정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AI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이 만든 것인지 AI가 만든 것인지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AI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해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현행법 250조 1항·2항, 251조 가지고 딥페이크 영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빠르게 확산·전파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250조(허위사실공표죄)보다는 좀 가중처벌하는 걸로 해서 250조 4항을 그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거잖아요. 현재 선관위가 운용하는 기준은 ‘이게 딥페이크입니다’라고 표시를 하면 일단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두 번째, 그런데 현재 상태는 허용이 되되 그중에 선거법 위반이 있거나 비방이 있거나 명예훼손이 있거나 이런 등등등의 내용이 있으면 그 유관된 법으로 의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게 현재 선관위의 방침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문제는 딥페이크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 허위인데, 그게 다양한 방식으로 결국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의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지금 장동혁 위원이 주로 하신 내용인데 문제는 그렇게 발의된 법안이 없거든요, 지금. 그걸 우리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이걸 종합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현재 발의된 법안 내에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조합들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후보자 등, 기존의 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 공표는 주로 후보자가족까지의 대상에 관하여라고 하는 내용으로 규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규제대상의 범위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의 모든 부분에 포함할 것인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소위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 제기도 지금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권이 남용되거나 선관위의 재량권이 너무 넓어지거나

이런 실제적 문제가 발생해서 오히려 이거는 거꾸로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아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포함해서 소위 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전문위원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지난번 대선 때 AI 딥페이크 기술 써서 홍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홍보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그래서 ‘후보자 또는 배우자 또는……’ 이렇게 좀 정해서 이 사람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그런데 여기에 가상인물을 제한하자는 거지요, 다른 제3자의 가상인물이 아니라.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방송광고를 정당이 허용해 주는 딱 특정 시간에 언제 언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딱 좁혀 주는 듯이, 옛날에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정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자 이 말인 거지요?

○이원택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가지요, 범위를.

○장동혁 위원 그런데 저는 딥페이크 영상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는 게 그렇게 범위를 정하면, 아까 후보자가 정책을 설명하는 거다 그랬는데 후보자가 정책 설명하는 영상 찍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영상 쓰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딥페이크 영상 대선 때 허용해 줬던 것은 대통령한테 ‘축사나 뭐 말씀 좀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것 찍을 시간도 없다, 우리가 그 영상 만들어 줄 시간도 없다라거나 아니면 찍을 시간도 없어서 그냥 직접 제작해서 쓰는 경우들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아니, 특별한 일 없으면, 더군다나 후보자·배우자 이런 사람들 영상 만들 거면 직접 찍으면 되지요. 찍으면 되는데 그것 하자고 지금 딥페이크 영상 자체를 문을 열어 주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도무지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직접 찍으면 되는 것을, 그리고 직접 찍어서…… 사실은 후보자의 태도나 말할 때 그 어떤 것들이 어떻게 가감 없이 전달되느냐도 중요한데 딥페이크 영상 써서 본인의 말할 때 단점이나 이런 것 감추고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내보내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후보자들에게…… 왜곡된, 잘못된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이원택 위원 범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진을 포토샵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진이나 포토샵을 해서 나갔느냐,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의 실체에서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 허용 범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해진 위원 그것하고 유사한 것이기는 한데 우리는 특정되어 있는 인물을 모방한 것을 전제로 해서 허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정되어 있는 인물,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특정된 인물을 가장해서 하니까 그게 허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예 AI가 처음 생성하는 인물 있잖아요, 누구를 모방하는 게 아니고 창조해 가지고. 그것은 허위냐? 살아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기준을 잡으면 허위지요. 살아 있지 않은데 살아 있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그것은 허위인데 그러면 살아 있는 것이 허위와 진실의 기준이나,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충족시켜서 다 하느냐, 그것도 또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영배 그때는 내용이 문제겠지요.

○조해진 위원 그래서 AI로 생성된 인물을 다 허위라고 말하는 것은 자체 생산, 창조한 인물은 허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막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위원님은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기를 하신 것이고 아까 이원택 위원님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해 주는 게 추세상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리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제기를 하는지가 지금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조해진 위원 아니, 그것은 장 위원님처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하고 경우에 따라, 경우를 따져 가지고 허용과 불용을 정하자고 할 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따져서 구분해서 어떤 것은 허용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것은 불허하고 하는 게 행정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문제도 또 있어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들이 다 타당한 문

제들이고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일단 논의를 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는 말씀 드리고요.

가중처벌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저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나중에 어떻게 결론 나든지 간에 만약에 하자고 결론이 나면 덤페이크라고 표시도 안 하고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당선과 낙선을 위해서 뭔가를…… 만약에 우리가 법을 허용한다면 당연히 저는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논의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일단 대강 논의를 해 놓고 나머지 전체 갈래를 타는 논의를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입법상 아까 첫 번째 논의했던 선거운동의 방법 관련된 피켓 소지 문제는 합의가 됐지만 의결은 다음번 논의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회기에 한 번 의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첫째 주예요 회의를 한 번, 우리 소위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으니까 일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8일 날 아마 본회의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주 초에 논의를 한 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 안에 입장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모인들 결론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당에서 오늘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입장 정리를 하고 해야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영배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기하신 쟁점들을 정리해서 신속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맹성규 위원님과 박정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법안,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과 관련된 후속 법안의 논의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다룰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소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로 고생하셨습니다.
중선관위의 사무차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 회의 안건과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영 배 맹 성 규 박 정 하 이 원 택
장 동 혁 조 해 진 최 형 두

○청가 위원(1인)

문 진 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 문 위 원 신 문 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 무 차 장 허 철 훈